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법제

정보신청기관 : 육아정책연구소

I. 서 론

프랑스는 1983년 1월 7일과 7월 22일 지방 및 국가 간의 권한 분배에 관한 지방분권법(Lois de décentralisation relatives à la répartition des compétences entre les communes, les départements, les régions et l'État des 7 janvier et 22 juillet 1983) 제정을 통해 중앙정부가 시행했던 사회복지 임무가 포함된 의무적 권한(Compétences obligatoires)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했다. 위 법에 준거해 임신부 및 유아 복지와 아동복지 임무는 지방의회의장의 의무적 권한에 속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에 사회복지활동과 건강예방분야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시와 군은 아동복지와 가족 및 아동의 건강 보호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임무(질병, 산재, 노인 및 가족)와 성인 장애인 복지 가정 방문지원, 장애인 보조자인 제3자 보상지원, 노인복지, 사회약 방지가 포함된 사회복지 임무를 담당한다. 이에 따라서 지방의회 산하에 시, 군(Département)

단위의 아동복지 기구가 창설되었으며, 아동인권협약, 친권, 친자관계, 보호가정수용, 교육지원 등의 분야에서도 많은 개혁이 이루어졌다. 아동보호분야 개혁에서도 처음으로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행정 및 사법기관 간의 정보교환 및 임무 구분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성립된 것이다.

사회활동 및 가족법(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L.221-1조는 아동복지(Aide sociale à l'enfance - A.S.E.)에 관해 장애, 연령 또는 경제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포함되는 복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법인화되지 않은 기관이 담당하는 복지라고 정의하며, 지방의회의장의 권한 아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아동복지 기관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방, 보호 및 학대 방지를 통해 아동과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지원을 제공한다고 규정한다. 위 법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사회부적응에 직면한 21세 미만의 성인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복지 담당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일반 임무: 건강, 안전, 도덕성을 위협하거나 교육 또는 신체 발달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친권자, 친권이 해제된 미성년자, 사회부적응 문제에 직면한 21세 미만의 성인에 대한 시설, 교육, 심리적 및 물질적 지원
- 단체 예방 임무: 사회적 부적응 위험이 드러나는 장소에서 양극화 예방, 사회적 소외계층의 청년층과 가족의 사회적 적응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활동 조직
- 보호 임무: 미성년자를 위한 긴급 보호 활동
- 교육 임무: 부모의 동의 또는 법관의 명령에 의해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미성년자에게 해당 미성년자의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과의 협력을 통한 필수품 공급 및 진로 감독
- 학대 방지 임무: 상기 지원활동을 통한 미성년자 학대방지 활동 이행과 학대받는 미성년자의 정보 수집 및 학대받는 미성년자 보호
- 감독 임무: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해당 아동이 부모를 제외한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 발전을 도모하는 감독 임무가 있다.

입양에 관해 지방의회는 입양 대상인 국가가 후견하는 고아(Pupilles de l'Etat)와 가족을 잊은 아동의 입양지원과 입양 부모의 입양승인 신청 심사 임무를 담당한다.

지방아동복지담당기관은 구체적 아동복지 활

동으로 월 수당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지원 및 사법부 및 행정부처의 지시에 따른 교육활동 지원과 같은 교육, 심리적 지원을 통한 예방성격의 복지, 관할지역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응지원, 아동, 청소년, 임신부, 3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사회로부터 소외된 독신모, 자폐아 및 정신 질환 아동 수용 및 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의 수용 및 치료, 입양 가족을 위한 입양허가증 발급과 국가가 후견하는 고아입양 주선 및 입양 가족 지도와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아동복지 업무 수행을 위해 지방 아동복지 담당기관은 관련법이 정하는 아동복지 시설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공공 및 민간시설과의 단체 및 개인 협약을 통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를 담당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대한 감독을 집행한다.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기관은 긴급상황일 경우, 공화국 검사 또는 아동문제 담당 법관에게 아동학대를 신고하며,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가족과 해당 아동에 관한 정보수집에 참여한다.

2012년 현재 프랑스 전국에 걸쳐 400,000명에 달하는 아동이 아동복지 혜택을 받으며, 아동복지와 관련된 수당을 받는 가족을 포함하는 경우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이 아동복지 혜택을 받는다. 매년 50억 유로를 넘는 아동복지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사회보장예산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프랑스의 아동복지제도는 모자보호(PMI)와

아동복지(ASE)라는 두 개의 분야로 구성되며, 아동복지에는 아동과 육아 가족에 대한 아동복지, 육아와 육아교육지원 및 입양지원을 제공하는 일반적 아동복지제도와 아동학대방지와 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제도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권한으로서 위험에 처한 유아나 아동의 보호시설 위탁수용을 결정할 수 있다.

II. 모자보호(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 PMI)

1920년 알자스 지방의 소아과 의사 빌 로메르 (Rohmer)가 설립한 알자스 로렌느 육아협회에 영감을 받은 1945년 11월 2일 명령에 준거해 창설된 모자 보호제도는 엄마와 유아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모자보호제도는 각 지방의회가 운영하며, 각 시, 군의 사회복지센터 내에 모자보호 또는 유아보호센터가 설립되어 모자보호를 담당하는 육아전문 간호원, 정신운동 훈련가, 임산부 및 유아전문의, 산파 및 사회복지 도우미 간의 유기적이며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능케 한다.

지방의회가 지원하는 모자보호제도는 다음과 같은 4개 분야의 임무를 담당한다.

(1) 출산전후 모자 무료진료: 조기 및 1차 예방

- 임신으로 인해 사회적 또는 의료적 위험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산파의 가정방문지도

- 임산부 상담 및 지도
- 출산 후 귀가한 모자에 대한 가정방문 관리
- 가족계획 및 교육 활동: 의료상담과 지도(피임, 성병감염, 산부인과 소개, 낙태 전후 상담과 지도, 부부 및 가족문제 상담, 혼전 상담)
- 청소년층에 대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
- 모자보호 안내 및 정보제공
- 산후 보모지원 신청 심사

(2) 유아 보호

- 6세 이하의 유아를 위한 의료-사회 지원활동 (유아보호 상담과 보육사의 가정방문 상담)
- 6세 이하 유아의 장애예방 및 검진활동과 장애 아동보호 가정에 대한 자문 지원활동
-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활동(장애검진, 장애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소개, 장애아동의 사회적응 지원)
- 유치원생의 건강 검진
- 아동 위탁 보육 가정 및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 및 감시
- 보모 활동 감독 및 감시, 보모자격증 발급 및 교육 훈련

(3)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아동 수용

(4) 아동이 관련된 질병 역학 및 공중 건강정보 수집 및 처리

파리의 경우, 가족계획 대상인 젊은 여성, 부부 및 청소년 교육 및 홍보, 부부관계 및 성교육 정

보, 부부생활 자문, 피임 및 의료상담, 성병 검진 및 치료를 담당하는 22개의 모자보호 센터와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질병 예방 및 진료, 건강 검진 및 교육, 아동의 사회참여 활동교육을 임무로 하는 69개의 유아보호센터가 설립되어 있다.

유아는 출생 후 6세까지 담당의사가 유아 건강을 관리하며, 유아의 성장 및 개발 감독, 의무 접종 실시, 행동 및 정신 건강, 감각, 시각 및 청각 장애 검진을 시행한다. 육아 부모는 유아의 생활 리듬, 영양 섭취에 관한 소아과 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사의 자문을 획득할 수 있다. 출산 후 모자보호 센터의 육아 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육아 자문과 젊은 엄마를 위한 수유 동반 지원도 제공된다. 또한 유아의 자각 활동 지원을 위해 부모와 유아가 참여하는 자각 교실 및 정신운동 교실과 관련 책자, 동화 및 노래교실 등도 운영되며, 육아 부모 간의 정보 교환을 제공하는 대화교실이 제공된다.

임신부의 경우, 임신 관리 및 치료와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며,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임산부를 위해 모자보호센터가 사회복지 혜택 가능성을 제시하고 탁아소 등록을 지도한다. 각 모자보호센터는 영아 탁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출산을 지원하는 산파 목록을 제공한다.

장애 또는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과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모자보호센터는 병원의 소아 서비스 담당부, 개인의사, 임신부를 지원하는 의료-사회센터, 학교건강서비스, 사회복지기관, 전문시민단체, 부모-아동 수용센터, 영아보육시설

과 밀접한 협력관계를 통한 6세 이하 아동의 장애예방과 검진 및 장애아동 부모에 대한 육아 자문지원과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수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비불어권 이민가족의 육아상담을 위해 사회문화 조정관과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III. 아동복지(Aide sociale à l'enfance - A.S.E.)

1. 아동복지기관

1983년 지방분권법에 준거해 아동복지 임무를 이전받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56개 지방)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분할되며, 복지활동과 지원 방식에 따라 조직된 지방 단위의 중앙아동복지 시스템을 채택했다. 지방아동복지기관은 아동복지감독관이 관할하는 8개의 아동복지 담당기관으로 구성된다. 지방아동복지기관은 임신부, 유아 및 아동보호, 입양, 재정위기에 처한 육아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34개의 지방아동복지기관이 아동양육 부모의 소득에 기초한 양육 및 교육수당 제도를 수립했으며, 학대아동 방지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수립했다. 지방아동복지기관은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 지원 활동으로서 개방 교육 활동(Actions éducatives en milieu ouvert - AEMO)과 자택 방문 교육 활동(Actions éducatives à domicile - AED), 아동을 위한 주택지원으로 지방아동기숙사 설

치, 보호가족입양 및 사회경제 또는 가족동반제도(Accompagnement en économie sociale ou familiale - AESF) 등을 시행한다. 아동복지수당은 1차 예방 수당(수당 지급, 가정방문지도), 2차 예방 수당 지급(AED, AESF, AEMO 등), 보호수당(수용, 보호시설 제공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된다. 중앙정부는 지방위생 및 건강국(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s affaires sanitaires et sociales - DDASS)을 통해 지방아동복지기관의 복지 업무를 지원한다.

각 군의 아동복지 계획은 해당 군이 설립한다. 또한 각 군의 아동복지 기관은 임신부와 아동을 동반한 엄마의 수용시설을 설립해야 한다. 각 아동복지기관 간의 관리와 업무 조정은 아동 예방 및 보호국이 담당한다. 아동과 가족 간의 평형상태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한 모든 개인은 해당 주거지의 지방 연대 기관의 해당 분야의 사회복지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아동 예방 및 보호국은 24시간 가동하는 긴급시스템을 운영한다.

각 군의 아동복지기관은 미성년자 및 가족에 대해 개별적이거나 단체 예방 교육을 제공하며, 아동 건강, 안전 및 교육을 위한 가정방문 지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시민단체의 예방 팀이나 클럽 활동을 통해 아동 및 육아 가정의 사회부적응 현상 해소, 아동복지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인터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보호, 친권이 해제된 청소년 보호 및 미성년자를 수용하는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시설 및 윤리 감독을 주 임무로 시행한다.

아동복지기관은 부모의 요청에 의해 보호기관에 위탁 수용 또는 법관의 명령에 의해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보육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으로 개방 교육 활동(AEMO), 방문 교육 활동(AED), 재정지원 및 도우미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2. 아동복지활동의 내용

1) 가정방문지원(Aide à domicile)

가정방문지원은 의료, 사회 및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육아 부모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방문지원은 육아 부모 또는 육아를 담당하는 개인의 요청 또는 동의하에 아동의 건강, 안전, 성장 또는 교육에 필요하거나 육아를 담당하는 개인이 충분한 소득이 없을 경우 시행된다. 의료, 사회 및 재정 문제에 직면한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가정방문지원은 시청, 지방사회복지센터 및 아동복지센터에 신청한다.

가정방문지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아로 인해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교육 및 사회적 장애에 직면한 육아 가족에 대한 사회 및 가족담당 복지사 또는 살림 도우미 파견
- 생활비 관리를 위한 정보, 자문 및 기술 지원
- 육아 부모의 동의 또는 요청에 의해 아동에

대한 가정방문 교육지원으로서 학용품과 아동교육에 필요한 정보 및 자문 지원
- 예외적 가족 수당 또는 월 가족 수당 및 가정 방문지원금 지급을 통한 재정지원

사회 및 가족담당 사회복지사는 법관의 결정에 의해 수용 가정에 위탁 보육되던 아동이 본 가족으로 잠시 귀가한 경우 상기 가정을 방문지도한다. 방문은 친부모의 거주지 또는 중립지역에서 이행된다. 방문지도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방문 시 부모의 성격과 가족 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동보호를 위한 다양한 해결책(민, 형사 및 행정상의 보호책과 모자보호)을 제시하며, 아동학대에 관한 복지 종사자 교육, 방문지도 해당 분야 결정, 사회복지사의 개입 조건 결정 등의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사회활동 및 가족법 제L.222-1조~제L.222-4조 및 제R.222-1조~제R.222-4조).

2) 사회 및 가족경제 동반지원(Accompagnement en économie sociale et familiale – AESF)

사회 및 가족경제 동반지원은 지방의회의장이 주관하며, 아동복지기관의 지원 제안을 받은 육아 부모 또는 육아를 담당하는 개인의 동의 또는 요청에 준거해 사회 및 가족 경제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등이 시행한다. 사회 및 가족경제 동반지원은 육아 부모의 일상 생활비 관리에 대한 정보와 실질 생활 방식에 대한 자

문 및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 부모가 직면한 제정 문제에 대한 해당 부모의 이해를 유도하고, 지출 생활비의 우선순위 작성과 생활비 관리방식을 설정하며, 예상치 않은 지출이 발생할 경우 육아 환경 및 소득 수준에 따른 대처 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 및 가족경제 동반 지원을 통해 육아 부모와 아동은 주거, 식품, 생활유지 및 아동건강, 가족건강, 아동교육 및 여가와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요소에 관한 지출내역 평가 및 관리능력을 획득한다(사회활동 및 가족법 제L.222-1조~제L.222-7조).

3) 가족예산관리 지원에 관한 사법조치

육아수당을 수령한 부모가 아동의 건강, 교육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육아를 위해 육아수당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아동보호에 관한 사법정책의 일환인 가족예산관리 지원에 관한 사법조치에 준거해 위임인에게 육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상기 조치의 대상이 되는 육아 및 가족수당은 아동보호수당, 가족수당, 가족보조금, 장애아동 교육수당, 가족지원수당, 육아부모일일수당, 아동개학수당, 주택보조수당 및 육아부모에 대한 사회연대소득이다. 위 사법조치는 육아 부모 중 1인, 가족수당 지급기관, 공화국 검사, 육아 부모가 거주하는 시의 시청이 법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가족수당 수령 위임인은 육아 부모의 협력 하에 아동의 성장, 건강 및 교육에 필요한 해당 수당 관리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행사하며, 육아 부모의 독자적인 수당 관리 능력 습득을 위

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사법조치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아동법관이 제청한 결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사법조치는 법관, 검사, 상기 조치 신청자 또는 가족수당 수령 위임인의 요청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민법 제375-9-1조, 사회복지법 제L.434-12조, 제L.552-6조 및 제L.755-4조, 사회활동 및 가족법 제L.222-4조, 제L.474-1조~제L.474-8조, 민사소송법 제1200-2조~제1200-13조).

4) 아동위탁보호(Placement des enfants)

육아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동보호기관에 요청하거나 법관의 명령에 의해 아동을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보호할 수 있다. 위탁보호 대상 아동은 일상적인 생활 조건 내에서는 한시적으로 육아가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애정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이다. 아동의 위탁보호를 신청하는 육아 부모는 서면 위탁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위탁 장소는 부모와 아동복지 기관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며, 1년 이상 아동의 위탁보호를 신청한 부모는 개인신상정보 비밀을 요청할 수 없다. 아동복지 기관의 위탁보호는 1년을 초과할 수 있으며, 아동과 부모 간의 친권은 폐지되지 않지만, 위탁보호 기간 동안 친권행사는 정지된다.

법원의 결정에 준거한 위탁보호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교육지원을 위해 위탁되거나 친권이 위임된 아동이다. 육아 가족의 행동이 아동에게 위험을 야기하는 경우, 아동복지기관은 법관에

게 해당 아동의 위탁보호를 제소할 수 있으며, 사법 결정에 따라 아동복지기관에 위탁된 경우, 육아 가족은 해당 아동의 위탁 선택 및 장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해당 아동 또한 관련 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위급 상황 또는 육아 부모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아동복지기관은 즉시, 공화국 검사에게 아동의 위탁보호를 제소해야 한다. 미성년자 범죄인의 경우, 아동법관, 예심판사, 범법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영장 심사 법관의 결정에 의해 아동보호 기관에 위탁보호된다.

부모가 아동 위탁보호를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 기관은 정신적 또는 재정적 이유로 인한 해당 부모의 아동육아책임 시행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위탁보호 허가절차를 검토하며, 부모는 아동 위탁보호 유지에 대한 동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미성년 범죄인의 위탁보호는 가족을 벗어난 미성년자의 위탁보호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법관이 언제라도 명령할 수 있다. 미성년 범죄인 위탁보호에 대한 재검은 상기 위탁보호 결정 후 최소 1년이 지난 후 부모, 후견인 또는 미성년 범죄인 본인이 법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탁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차원에서 위탁보호기간이 2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뚜렷한 동기가 발생할 경우 위탁보호는 연장할 수 있다(사회활동 및 가족법 제L.221-1조, 제L.221-2조, 제L.221-4조, 제L.223-1조~제L.223-5조, 제L.227-1조~제L.227-4조).

부모가 육아능력을 결여하거나 부모가 없을

경우, 아동복지기관은 위탁보육가족 또는 부모의 거주지에 근접한 보육시설에 해당 아동을 위탁 보육할 수 있다. 또한 부모 또는 장관의 요청에 준거해 가족사건 담당 법관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부모가 선택하는 제3자에게 아동의 위탁보육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는 친권을 유지하며, 아동을 위탁 보육하는 제3자는 아동의 감독과 교육에 대한 전권을 행사한다(민법 제373-3조~제373-5조, 제374-1조~제374-2조, 사회활동 및 가족법 제L.221-1조, 제R.221-1조~제R.222-2조).

아동복지기관은 또한 국가가 후견하는 고아에 대한 한시적 또는 영구적 보호를 수행한다. 친권이 확립되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은 아동, 아동복지기관에 2개월 이상 수용된 아동, 유기 아동, 비밀 출산으로 출생된 아동, 친권은 알려졌지만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아동, 친권이 확립되고 알려졌지만 의도적으로 아동복지기관에 맡겨진 아동, 고아, 부모의 친권이 박탈된 아동, 고등법원에 의해 유기아로 선언된 아동은 국가가 후견하는 고아로 간주된다. 이러한 아동은 지방의회 의장의 허가를 취득한 후 부모가 즉시 아동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인 2개월에서 6개월 간 국가가 후견하는 고아로서 수용시설에 수용된다. 수용시설에 수용된 아동을 부모에게 반환할지 여부는 후견인 또는 가족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상기 위원회의 반환 거부 결정의 경우 부모는 고등법원에 아동 반환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후견하는 고아는 가족위원회의 동의하에 후견인이 입양계획을 수립하며, 위탁 보육을 담

당한 개인이나 아동복지기관이 인증한 개인이 상기 아동을 입양할 수 있다(사회활동 및 가족법 제L.224-1조~제L.224-11조).

5) 육아 청취, 지원 및 원조 네트워크(Réseau d'Écoute, d'Appui et d'Aide à la Parentalité – REAAP)

1998년 6월 12일 개최된 가족 협의에 의해 도입된 육아 청취, 지원 및 원조 네트워크는 출산, 육아로 인한 일상생활 리듬의 변화, 부모 중 1인 사망, 이혼, 재혼 등을 겪는 육아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첫 번째 교육자의 역할을 완수하게 함으로써 부모의 육아 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크는 각 군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전국적인 규모로 시행된다.

국가가 주창하고 가족수당기금이 시행하는 상기 네트워크는 육아 부모 및 유아지원센터에서 육아 부모 동반 지도와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육아교육지원을 제공하여 육아 부모와 유아 간의 긍정적이고 조화된 관계 구축과 유지, 육아 부모의 외로움 및 육아 어려움 해소, 아동에게 사회 및 가정생활 습득 장소와 기회제공 및 거주 지역에서의 사회생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네트워크는 아동이 필요로 하는 생활요건,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 가정생활, 부모 권리, 부부 및 가족 간의 분쟁 관리, 생활규칙 준수, 가족과 학교 간의 관계, 사회활동 지침 준수 및 제한, 미성년 육아 부모 지원, 영화 상영, 전문가 상담 및 육아 부모 간의 만남 등 다양한 내용의 교육 및 지원 활

동을 제공한다.

네트워크 참가 부모는 교육 목적 및 내용 결정, 육아 문제의 분석 및 해결, 지원 활동, 아동과 단체 활동 및 교육평가 참여를 통해 각 육아 부모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상기 교육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 육아 부모, 지방자치 단체 또는 기타 관련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네트워크 참가 부모, 육아지원 기관 및 관련단체는 교육 개발, 육아 부모의 동반 지원,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육아 교육 촉진을 위한 의무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헌장에 서명해야 한다.

6) 청소년 및 가족의 사회적응 촉진

도시빈민지역이나 사회부적응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와 가족에 대한 극단화 방지와 사회적응 및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군의 아동복지기관은 해당 개인의 사회 적응 활동, 소외계층의 미성년자 및 가족을 위한 특별예방활동 및 사회-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상기 임무 이행을 위해 지방의회의장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자격을 부여해 소외 계층의 미성년자 및 가족의 사회참여 지원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7) 아동보육시설

지방의회의장이 부여한 권한에 준거해 각 시의 시장은 법인 또는 자연인이 운영하는 6세 이하의 아동수용시설의 건축, 확장 및 변형에 대

한 의견서를 발급하며, 시민단체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상기 보호시설 개발에 대한 다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시의회는 유치원을 포함하는 6세 이하 아동보육시설의 장비, 시설, 보육의 질 및 보육방식에 대한 조사, 보육기간 동안 아동이 필요로 하는 물품 조사, 유아 보육 장비 및 서비스 개발에 대한 세부 계획과 소요비용 사용에 대한 감사를 수행한다.

모든 지방 도시나 통합시는 부모 및 보모에게 민간 또는 공공 보육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육아 부모, 보모 및 유아 전문가 간의 만남의 장 및 육아 서비스 교환을 임무로 하는 임산부지원센터(Relais assistantes maternelles - RAM)를 설립 할 수 있다. 센터의 관리는 유아 전문가가 담당하며, 육아 부모는 무료로 보육 시설 및 보모 지원에 대한 상담 및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센터는 보모 간의 만남의장을 주선해 보모 활동에 필요한 정보 교환 및 보모 활동에 대한 동반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유아에 대한 음악, 수공업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써 유아의 사회성 개발에 일조한다. 가족수당기금과 농촌사회 조합이 센터 일부 운영비의 재정을 지원한다.

8) 재정 지원

(1) 출산수당(Prime à la naissance)

출산수당은 출산을 준비하는 임신부에 대한 수당으로 유아의 출생과 육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으로 간주된다. 출산수당의 대상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

신 6개월차 임신부로 1차 출산 전 의료 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산재 또는 직업병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부, 동거 커플로서 각각 최저 월 4,708유로의 소득(2010년 기준)을 취득해야 하며, 소득 규모 및 부양 아동의 수에 따라 규정된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임신 14주차에 이른 임신부는 가족수당기금에 임신을 신고해야 하며, 출산수당 신청 심사는 임신 6개월 내에 이행된다. 세전 출산수당은 월 최고 912.12유로이며, 의사의 증명서에 준거해 각 출산 아동마다 임신 7개월째에 일시불로 지불된다. 출생 신고서가 작성되었지만 사산의 경우와 임신 5개월 이후 발생한 유산의 경우에도 출산수당은 지급된다(사회복지법 제R.531-1조~제R.531-6조, 제L.533-1조).

(2) 입양수당(Prime à l'adoption)

아동복지기관, 입양 허가를 취득한 프랑스 단체 또는 외국 입양 담당기관을 통해 20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경우, 입양 부모는 입양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입양수당 대상은 소득을 지급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산재 또는 직업병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부, 동거 커플로서 각각 최저 월 4,708유로의 소득(2010년 기준)을 취득해야 하며, 소득 규모 및 부양 아동의 수에 따라 규정된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입양수당은 거주지의 가족수당기금에 입양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한다. 입양 수당액은 최고 1,824.25유로이며, 입양 아동이 가정에 도착한 달에 일시불로 지급된다(사회복지법 제L.531-2조, 제L.533-1조

~제L.532-1조).

(3) 기본육아수당(Allocation de base)

기본육아수당은 20세 미만의 입양 아동 한 명을 부양할 경우 입양 아동의 나이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대상은 소득을 지급하는 직업에 종사하거나, 산재 또는 직업병 보상금을 수령하는 부부, 동거 커플로서 각각 최저 월 4,708유로의 소득(2010년 기준)을 취득해야 하며, 소득 규모 및 부양 아동의 수에 따라 규정된 소득액을 초과할 수 없다. 출산의 경우, 거주지의 가족수당기금에 가족수첩 또는 출생 신고서 복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며, 입양의 경우, 입양 기본수당은 해당 입양아가 입양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지급된다. 기본육아수당은 매월 최고 182.43유로가 지급되고, 출산의 경우 출생일부터 해당 아동이 3세에 도달하는 날까지 지급되며, 20세 미만 입양아는 입양 후 3년 간 지급된다. 기본육아수당은 기타 기본가족수당과 중복 지급될 수 있으며, 육아 부모 1일 수당과 입양아를 위한 가족지원 수당과도 중복 지불되지만, 가족보충수당과 3세 미만 아동기본수당과는 중복 지급될 수 없다. 출산 후 유아가 사망한 경우 기본육아수당은 출산 후 3개월간 지급되지만, 사산의 경우 기본육아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사회복지법 제L.531-3조, 제L.533-1조, 제 D.532-2조).

(4) 자유로운 활동 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자유로운 활동 선택 보조금은 직업에 종사하

는 부모 중 1인이 육아를 위해 직업 활동을 축소 또는 포기할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으로서 최소 1명의 3세 이하 아동을 키우고, 육아를 위해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직업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부모는 민간이나 공기업에서 육아 휴가 또는 공직 분야에서 법정 부분근무제도를 선택 할 수 있다. 해당 부모는 상기 보조금 신청 시 1명의 아동일 경우, 출산 또는 입양 전 3년간, 2명의 아동은 4년간, 3명 이상의 아동은 5년간의 직업 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조금은 최대 월 566.01유로이며, 육아 아동이 1명일 경우 출산 및 입양일 또는 출산 휴가 마감일부터 최대 6개월 간, 2인 이상 아동일 경우 최대 3년 간 지급된다. 또한 최소 3인의 아동을 육아하는 부모일 경우 활동 자유 선택에 대한 보조금(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activité)을 지급받으며 해당 부모는 출산 또는 입양일부터 최대 1년 간 직업 활동을 전부 중단해야 한다. 지급액은 월 최대 809.42유로이며, 출산 또는 입양일부터 최대 1년 간 지급된다(사회복지법 제L.531-4조, 제L.532-2조, 제R.531-4조, 제D.531-4조, 제D.531-12조, 제D.531-16조 및 제D.531-16-1조).

(5) 보모지원금(Aides à la garde d'enfant)

6세 이하의 아동 보육을 위한 보모를 고용해야 하는 부모에게는 보모지원금이 지급된다. 최저 소득이 독신 부모는 월 399유로, 부부는 월 798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금은 시간당 최대 46.10유로를 지급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 및 아이의 나이 및 수에 따라 최대 452.75유로를 지

급한다. 지급기간은 보모의 근무기간에 준거한다. 지방의회 또는 도지사가 감독하는 자격을 획득한 보육시설에 아동 보육을 맡기는 경우, 보육 기간 동안 최대 월 827.87유로를 지급한다. 직업 교육을 받고 있는 실업 부모의 경우, 직업 교육 개시일부터 최대 12개월 간 최대 520유로를 지급한다(사회복지법 제L.531-1조, 제L.531-5조~제L.531-9조, 제R.531-5조, 제D.531-19조~제D.531-24조).

(6)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20세 미만의 아동을 최소 2인 이상 육아하는 가족에게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가족수당이 지급된다. 2012년 4월 1일부터 2인 아동은 월 127.05유로, 3인 아동은 월 289.82유로, 4인 아동은 월 452.59유로, 4인 이상 아동은 아동당 월 162.78유로를 지급받는다. 매년 1월 1일 가족 수당액 평가가 행해지며, 가족수당기금은 두 번째 아동의 출생 신고 후 자동적으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사회복지법 제L.521조 및 제R.521조). 또한 3세 이상 20세 미만의 아동을 3인 이상 부양할 경우 가족수당기금은 소득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 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월 163.71유로의 가족수당보조금(Complément familial)을 지급한다. 상기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절차는 필요치 않으며, 해당 부모는 세무 당국에 매년 소득 신고를 필해야 한다(사회복지법 제L.522-1조 및 제L.522-2조, 제R.522-1조 및 제R.522-2조). 부모가 사망한 가족의 아동 육아를 위해 가족후원수당(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이 월

89.43유로(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월 119.11유로(부모가 모두 사망) 지급된다(사회복지법 제L.523-1조~제L.523-3조 및 제 R.523-1조~제 R.523-8조).

(7) 부모 참여 1일 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질병, 장애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 결함을 겪고 있는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는 부모에게는 부모 참여 1일 수당(Allocation journ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¹⁰이 지급된다. 해당 부모는 상기 치료를 위해 휴가일에 대해 1개월당 최대 22일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는다. 해당 부모는 고용주로부터 부모 참여 휴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민간 또는 공공 분야에 근무하거나 직업 교육생 또는 실업 수당 대상인 실업자이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 심각한 질병, 장애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결함으로 인해 부모의 동반 치료가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의견과 치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부의 경우 1일 42.20유로, 독신 부모의 경우 1일 50.14유로를 지급받는다. 또한 가족수당기금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부양 아동의 수에 따라 월 107.41유로의 의료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1일 수당은 최대 3년간 지급되며, 상기 기간 중 아동이 완치되면 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1일 수당의 지급과 더불어 지급기간 동안 현물 및 현금 형태의 의료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도 부여받는다(사회복지법 제L.544-1조~제L.544-9조 및 제R.544-1조~제R.544-3조, 제D.544-1조~제D.544-10조).

(8) 이사수당(Prime de déménagement)

셋째 아동 출산을 계기로 이사를 하는 부모에 대해 이사 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부모는 셋째 또는 그 이상의 아동을 출산해야 하며, 막내가 적어도 2세에 달하는 3명 이상의 아동을 부양해야 한다. 또한 3번째 아동 임신 3개월부터 출생 후 2년 내에 이사를 해야 하며, 이사 후 6개월 내에 주택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12년 4월 1일 현재 이사 수당으로서 3번째 아동출생 시 957,60유로, 4번째 아동출생 시 1,037.40유로가 일시불로 지급되며, 추가 아동출생 시에는 아동당 최대 79.80유로를 추가로 지급받는다. 새로운 주택에 대한 주택수당이나 개인주택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상기 수당지급은 철회된다(건축 및 주거법 제R.351-30조~제R.351-31조).

IV. 아동 학대 방지

프랑스는 아동의 건강, 안전, 도덕의식 또는 교육환경, 신체, 감정, 지식 및 사회성 발달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하는 상황에 직면할 경우,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고 간주하며, 학대를 받는 아동 또한 위험에 처한 아동에 포함한다. 위험에 처한 아동에 관한 정보는 의학적 요소는 물론, 아동과 해당 아동에 관련된 성인의 행동 양식 및 당사자에 대한 지원 등의 모든 요소를 망라한다. 사법부는 의료 및 사회활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기관과의 평가를 거쳐 작성된 위험에 처한 아동에 관한 서면 자료를 검토한 후, 해당 아동

보호를 위한 사법 및 행정적 조치를 각 군의 아동보호기구에 명령할 수 있다. 프랑스 아동보호에 관한 법으로는 2007년 3월 5일 아동보호 개혁에 관한 법(*Loi n° 2007-293 du 5 mars 2007 réformant la protection de l'enfance*), 2004년 1월 2일 아동 수용 및 보호에 관한 법(*Loi n° 2004-1 du 2 janvier 2004 relative à l'accueil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2006년 4월 4일 부부 및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예방 및 방지 강화에 관한 법(*Loi n° 2006-399 du 4 avril 2006 renforçant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au sein du couple ou commises contre les mineurs*)이 제정되었다.

위 법 중에서 기존의 아동보호 제도를 개혁하는 내용의 2007년 3월 5일 아동보호 개혁에 관한 법은 지방의회의장에게 위험에 처했거나 장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아동의 수용, 치료, 평가 및 정보 취득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아동보호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중심 역할을 강조한다. 이 법은 아동 성장에 치명적인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아동위험 방지 강화, 위험에 처한 아동 신고절차 개선 및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다양한 수용 조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상기법에 준거해 각 군은 아동보호에 관련된 위급한 정보를 수령, 처리 및 평가하는 기구를 창설했다. 아동보호를 담당하는 군 단위 기구는 아동 관련 정보 처리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직업상 비밀준수 의무 내에서 정보 교환 및 전송을 보장하며,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행정 및

사법기관 간의 최적의 임무 협조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 단위 아동보호기구는 위험에 처한 아동에 관한 정보 취득을 위한 유일 기관으로서 아동보호에 관해 사회복지기관, 의료 및 교육 분야 전문가와 검찰 간의 유기적 정보공유를 지원한다.

이후 위 법에 6세부터 15세 아동의 무료 검진 의무와 백신 접종 거부에 대한 징역형 및 아동 관련 사법 심리에 해당 아동의 증언 조건 수립에 관한 조항이 추가 개정되었다.

프랑스 형법 또한 위험에 처한 아동에 관한 정보전달의무를 규정하며(제226-13조, 제226-14조 및 제434-3조), 의사 윤리 규정도 위험에 처한 아동과 취약한 성인에 관한 정보를 당국에 경고하고, 해당 아동 및 성인 보호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한다. 사회활동 및 가족법은 사회복지 관련 전문가 간의 보호 활동 이행 및 상황 평가에 필요한 정보교환을 허용함으로써 아동보호 분야에서는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를 완화한다(제L.226-2-2조). 의사의 직업상 비밀 유지 의무의 대상인 의료 정보 또한 아동 보호 목적일 경우, 의사 간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된다.

위험에 처한 아동에 관한 정보가 취득된 경우, 지방의회의 아동복지 담당자가 정보 평가 및 처리를 담당한다. 해당 담당자가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해 아동보호를 위한 행정 또는 사법적 조치가 이행된다.

프랑스 형법은 아동학대에 관한 처벌 규정으로 아동의 건강을 침해하는 영양 섭취 또는 치

료 거부는 징역 7년 및 100,000유로 벌금형, 아동 살인은 30년 무기징역형, 아동에 대한 건강, 안전, 윤리 또는 교육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부모에게는 2년 징역 및 30,000유로의 벌금형, 아동의 교육기관 등록의무를 위반한 부모, 친권자에게는 6개월 징역 및 7,500유로의 벌금형,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사용 유발행위는 5년 징역과 100,000유로의 벌금형, 교육기관에서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마약사용 유발행위는 7년 징역과 150,000유로의 벌금형, 미성년자에게 마약 운송을 교사한 경우 10년 징역과 300,000유로의 벌금형, 15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알코올 판매는 3년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형 등 미성년자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항을 포함한다(형법 제227-15조~제227-28-3조).

또한 프랑스 형법은 성적인 성인 연령을 15세

로 규정하며, 아동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를 성폭행, 성적 학대 및 강간으로 구분하고, 성적 학대는 5년 징역형, 강간은 15년의 무기 징역형(제227-24조), 성폭행은 5년 징역 및 75,0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제227-25조). 아동에 대한 폭력 및 성적 학대는 형법상 범죄행위를 구성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개인은 검찰, 경찰 또는 현병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아동 폭력 및 성적 학대 방지를 위해 프랑스는 Allo119의 인터넷 사이트와 전국 번호인 119 및 각 지방 신고번호 체제를 운영한다.

강 흥 진

(해외입법조사위원, SAINT Consulting대표)